

1. 예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3,068,910	11,192,067
일반회계	327,290,612	9,818,718
특별회계	45,778,298	1,373,349
기타특별회계	45,778,298	1,373,3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62,236	46,867
수질개선특별회계	19,256,789	577,70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6,011	19,080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6,840,000	205,2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53,846	19,61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39,467	208,184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81,000	2,4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38,740	25,16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834,550	145,037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141,000	4,230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3,994,659	119,840

제 2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3,000,000천원으로 하며, 재난예비비는 335,63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